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891 판결 모욕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20노1891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소(기소), 김유나(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1363 판결

판결선고 2021. 6.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설이 아니고, 피고인이 쓴 댓글의 표현도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 경멸적 언사가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욕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와 정당한 비판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모욕의 고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경위, 그 당시 기사의 내용이나 다른 댓글들의 내용,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곤하게 생겼네... 꼴 페미들..*"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댓글을 쓴 기사에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함께 고소한 다른 댓글들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대한 비하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곤하게 생겼네"는 피해자의 얼굴을 지칭하면서 이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2 "꼴페미"는 꼴통스러운 대상에 붙는 접두사인 "꼴"과 페미니스트의 "페미"를 결합한 단어로 남성혐오주의,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를 지칭한다. 위와 같은 "꼴페미"의 통상적인 의미에 더하여, 기사에서 피해자를 페미니스트 작가로 소개하고 있었던 점, 기사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활동과 관련된인터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꼴페미들 "라는 표현 역시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상이나 사회활동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댓글로 쓴 표현은, 구체적인 표현방법이나 그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모욕죄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댓글의 내용, 표현방법, 기사의 내용 및 다른 댓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한다는 인식·인용이 있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